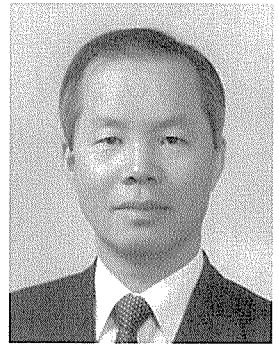


가축 질병과 축산식품의 안전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박 중 명

I. 축산식품의 안전성문제 대두

최근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이 증대되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축산식품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인체 감염(感染)의 위험성(人獸共通傳染病), 축산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와 지구 환경의 악화에 따르는 환경오염물질의 잔류에 의한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그리고 축산물 처리과정에서의 유해한 미생물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질환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

축산식품은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므로 병든 가축으로부터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

고, 도살·해체 처리과정에서 유해한 세균 등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여 식중독의 발생을 예방하며, 축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동물용 의약품의 가축 체내 이행 잔류와 또 산업발전에 따른 각종 공해물질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유해물질의 가축 체내 오염 축적을 과학적으로 규제하여 축산물을 이용하는 사람에서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양가치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가축의 사육은 역용(役用)과 퇴비(堆肥) 생산을 위한 중요한 영농수단으로 이해되어 왔고, 미맥(米麥) 위주의 전통적인 곡물 중심의 식생활로 인하여 축산물의 소비량은 매우 적었으며, 따

라서 육류의 식품으로서의 중요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따라 국민 소득과 소비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식생활에서 육류의 소비도 급격히 증가하여 1인당 육류소비량은 1971년 5.2kg, 1981년 10.2kg, 그리고 1991년에는 21.7 kg 으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왔으며, 2001년도에는 32.3kg 을 소비하였다.

축산물의 소비증가는 자연스럽게 축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축산업과 관련된 가축의 육종, 영양·사료, 사양관리, 환경위생, 수의학의 발전과 함께 축산관련산업(축산물 처리, 축산물 가공,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명적인 가축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들이 가축과 축산물에서 효과적으로 방제되고 있으며,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증가는 대규모의 기업적 축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계·양돈분야에서 이제는 소 산업에까지

확대되었고, 과거 농가 부업형태의 축산은 현대적 전업축산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양축농가 수는 감소하면서도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전형적인 기업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축산물의 급격한 소비증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로는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족한 물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하게 되었으며, WTO¹⁾ 출범 후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축산식품의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힘든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의 축산업계에서는 수입검역을 강화해서라도 수입을 억제시키라는 소리가 있다. 물론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기준과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²⁾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WTO/SPS 협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가축질병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수입규제의 수단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GATT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2)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 국제식품규격위원회(國際食品規格委員會,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식품의 규격·기준을 말함.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2년 UN의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가 합동으로 설립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의 규격 기준을 제정·관리하는 정부간의 모임 'CODEX'는 'code(법령)'를, Alimentarius는 'food(식품)'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이 위원회에서 설정한 규정을 보통 '코덱스(CODEX)' 또는 '코덱스 규격'이라고 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식품 및 동물 검역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규격 기준을 국제규격과 조화시키도록 권장하는 한편, 코덱스에 대해서는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국제규격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규격 기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 무역 상대국간 서로 다른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함.

◆ 기획특집 1

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9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새로이 발족된 WTO 체제에서는 수출·수입이 전면 개방되었고 수출·입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협정 즉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³⁾”과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PS)⁴⁾이 UR 합의문에 포함되어 조인됨으로서 1995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TBT 협정에 포함되어 있던 공산품, 농산물의 기술규정과 표준분야 및 잔류농약 허용한계, 검사규정, 표시사항(Labeling),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규정 중에서 식품안전과 동물, 식물의 위생 및 검역에 SPS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자국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관한 내용은 SPS 협정에서 다루게 되었다.

체택 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국제무역에서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SPS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는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에 일치되어야 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회원국간에는 무차별 및 내국민 대우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 요소(식품의 규격·기준, 검역조건 등)는 국제표준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식품의 교역은 그 동안 수입국의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는데서 앞으로는 유엔의 FAO/WHO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에서 정한 규격·기준에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격·기준과 지침(가이드라인) 및 권고사항(recommendation)들은 국제간의 조화를 위한 표준이 되었다.

가축과 축산식품의 교역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위생(검역)조건은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필수 전제조건이며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국제교역에서의 전제조건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위생상태를 규정하는 고도의 국제 위생기준이다. 수출을 하는 국가들은 수출상품의 규격·기준을 여기에 맞추어야만 선진국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 속에서 가축과 축산물은 가축군(群)의 건강, 번식조건, 도축(계)의 위생적인 처리·가공, 수송과 보관시설 등에서 위생적인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정부기관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출은 수입상대국의 요건에 따라 가축의

4)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 : 위생(Sanitary : 인간과 동물의 안전(건강)) 및 식물위생(Phytosanitary : 식물의 안전(건강))에 관한 조치로서 모든 국가들은 식품이 안전하고 동·식물간에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동·식물의 건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을 말함.

질병과 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충분한 수의학적 검사 요구되고 있으며 미생물학적인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건강한 가축은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의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자국내 축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을 위한 공중위생의 향상을 의미한다. 식품유래질병과 인수공통질병의 방제는 축산식품 위생분야의 중요한 역할이며 임무이다.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질병과 유해물질

로부터 안전한 축산식품의 공급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적절한 영양의 보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품으로부터 유래하는 위해의 예방과 국내산업의 보호는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두 가지 필수요소이며 정부, 산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모두 함께 하여야 하는 공동의 의무인 것이다.

표1. 주요 축산물 소비량 및 자급율

(단위 : 천 M/T)

년도	쇠고기			자급율 (%)	돼지고기			자급율 (%)
	총소비량	국내산	수입산		총소비량	국내산	수입산	
1995	301.2	154.7	146.5	51.4	661.7	625.0	36.7	94.5
1996	322.9	173.9	149.0	53.9	696.9	654.9	42.0	94.0
1997	362.0	227.8	134.2	62.9	698.3	633.5	64.8	90.7
1998	345.5	260.1	85.4	75.3	700.7	645.0	55.7	92.1
1999	392.7	239.7	153.0	61.0	755.4	621.1	134.3	82.2
2000	402.4	212.4	190.0	52.8	779.9	684.0	95.9	87.7
2001	384.1	164.4	219.7	42.8	807.4	714.8	92.6	88.5
2002	402.7	147.4	255.3	36.6	810.4	739.4	71.0	91.2

II. 가축질병과 축산물 안전성

가축(동물)질병의 역사는 사람의 질병의 역사와 그 궤(軌)를 같이 한다. 사람이 동물을 사육하면서 관찰된 가축의 질병(특히 전염병)은 사람의 질병에서와 같이 때때로 대유행을 하여

커다란 피해를 주어왔으며, 오늘날에도 가축질병은 축산에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돼지콜레라와 같은 몇 가지 가축질병의 병원체는 특정한 축종에 한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숙주특이성(Host specificity)이 있지만, 다수의 많은 가축질병

◆ 기획특집 1

의 병원체는 온혈동물(溫血動物)인 가축에 적응하는 특성을 더욱 발달시켜 같은 온혈동물인 다른 동물과 사람에게까지 그 병원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人獸共通傳染病).

동물의 질병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존재하여 왔다.

표2. 식육 위생검사의 변천

구분	초기 질병 검사	식육 위생검사	잔류물질 검사	병원성 미생물 검사
시 기	• 초기문명국	• 1900년대 이후	• 1960년대 이후 (1975 제도화)	• 1980년대 이후 (1997 : HACCP)
목적	• 식용 적부 감별	•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	• 동물약품, 환경 오염물질 등의 잔류 방지	• 병원성 미생물 (식중독)예방
방법	• 육안검사	• 병리해부검사	• 정밀기기분석	• 미생물학적 검사

중세(13~14세기) 이탈리아의 후로렌스(Florence) 지방에서 발달한 식육업 길드(Florentine guilds)는 소수 자본가들이 자신의 대규모 목장에서 생산한 식육을 후로렌스 지방에 독점 공급하는 것에 대항하여 소규모 식육업자들이 조직한 일종의 동업자조합이다. 후로렌스 시정부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매년 식육업조합 회원들에게 사업면허를 발급하고 준법서약을 하게 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위생적이고 부정한 식육은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감시하는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식육검사제도의 시초이다. 현대 수의학 교육의 효시가 되는 프랑스 Lyon의 수의학교(獸醫學校)는 1712년 당시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던 우역(牛疫,

Rinderpest)과 양의 탄저(炭疽, Anthrax)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가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프랑스 정부가 설립한 것이었다. 수의학의 역사는 이렇게 동물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동물 건강을 통하여 인류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과학”으로 발전하여오고 있다.

1920년 유럽의 우역 발생을 계기로 발족한 동물질병의 전문기구인 국제수역기구(國際獸疫機構,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¹⁾에서는 “매우 격렬하며, 국경에 관계없이 급속하게 전파할 가능

성이 있고, 경제 사회적으로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염성질병” 15종(표 3)을 A급 질병(List A disease)으로 분류하고, “국가 내에서 사회 경제적 또는 공중위생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에서 중요성이 있는 전염성 질병” 93종을 B급 질병(List B disease)으로

분류하며, A급과 B 급을 제외한 20종의 질병은 기타 질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대의 축산은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 다두사육 형태로 기업화, 전업화 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사육형태에서는 밀집사육으로 인한 사육환경의 악화로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 관리가 어려우며, 가축질병의 병원체가 필요로 하는 감수성 동물이 풍부하여 질병 발생의 기

표3. OIE 지정 List A 질병들

질 병 명	주 대상동물
① Foot and mouth disease(구제역)	우제류(소, 돼지)
② Vesicular stomatitis(수포성 구내염)	소, 돼지, 말
③ Swine vesicular disease(돼지 수포병)	돼지
④ Rinderpest(우역)	반추수, 돼지
⑤ Peste des petits ruminants(가성 우역)	소
⑥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우폐역)	소
⑦ Lumpy skin disease(럼피스킨 병)	소
⑧ Rift Valley fever(리프트 계곡열)	소, 양, 사슴
⑨ Bluetongue (블루텡 병)	소, 양
⑩ Sheep pox and goat pox(양두)	양
⑪ African horse sickness(아프리카 마역)	말
⑫ African swine fever(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돼지
⑬ Classical swine fever(돼지콜레라)	돼지
⑭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닭
⑮ Newcastle disease (뉴캐슬 병)	닭

5) 국제수역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 동물의 질병과 그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 위생규칙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1924년 프랑스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 및 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구로 공인되었다.

◆ 기획 특집 1

회가 많고, 그 피해도 비례적으로 커지게 된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고 공중위생학적으로 중요한 주요 질병에 대하여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질병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역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편으로는 근절되었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가축방역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Ⅲ. 국제화·세계화의 그림자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진 UR협상⁶⁾과 WTO, FTA⁷⁾ 등 국제화·세계화의 물결은 국제교역과 해외여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고, 우리 축산분야에는 동물에 중요한 가축질병의 전파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들 동물질병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급성질병이거나, 인수공통질병으로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어 그 위협은 공중보건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정책은 동물과 축산물의 교역을 규제하려는 각국의 노력(조건)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의 교역국과 교역량은 각국의 국경검역 노력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를 전제로 하는 SPS 협정은 오히려 검역업무의 혼란만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 무역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O157:H7⁸⁾ 오염, 호주산 쇠고기 엔도셀판 잔류, 벨기에산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 미국산 소시지의 리스테리아 오염 등과 같이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세계적으로는 대만,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한 구제역, 유럽의 돼지콜레라, 멕시코의 닭뉴캐슬병, 말레이시아의 니파(Niphar)바이러스병, 그리고 최근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북미의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⁹⁾ 등은 이제 한 국가의 가축질병이나 식품안전문제가

6)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7)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8) O157:H7 : 장출혈 성대장균 균주의 일종으로 사람에서 출혈성 장염과 용혈성 요독증(溶血性尿毒症) 및 혈전성저혈소판성자반증(血栓性低血小板性紫斑症)을 일으키며, 환자는 사망할 수도 있다.

9) 광우병 : 정확한 명칭은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며, 임상증상에서 유래한 광우병(mad cow disease)이란 용어도 흔히 사용하고 있음.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단숨에 세계 각 국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특히, 소해면상뇌증(BSE)은 1985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영국 및 서부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일본(2001), 이스라엘(2002), 캐나다와 미국(2003)에서도 발견되는 등 전세계 24개국에서 발생이 보고되었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오랜 잠복기, 프리온(prion)이라는 병원체의 특이성, 사람의 신종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nv-CJD)¹⁰⁾과 연관성 등이 알려지면서 그 확산속도에 비례하여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직접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BSE 에 대하여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과학과 생산성만 추구하여 온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집약적이고 생산성에만 치중한 축산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적 축산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도 친환경적인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을 주장하여 그 기준을 제정하여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동서 냉전(冷戰)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축질병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A급 가축질병 15종 중에서 돼지콜레라와 닭 뉴캐슬병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나라이었으나, 2000년 3월과 2002년 5월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2003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종식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금년에도 몽골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발생하였고, 그 전과경로가 다양하고, 전파력이 강하여 언제 이 질병이 다시 침입할지 알 수 없어 우리나라 가축방역 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축위생분야의 과제이며, 치열한 세계무역의 자유화 경쟁에서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은 국제화·세계화가 가져온 또 하나의 그림자이다.

'00년, '02년의 구제역, '02~'03년의 돼지콜레라, '03~'04년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사례에서 보듯이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여 축산식품 자체

10)nv-CJD(new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신종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유전적인 이유로 프리온(prion)에 결합이 발생하여 노년에 환자의 뇌에 스펀지 모양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치매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병이나, 최근 영국의 젊은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임상적 및 신경병리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종CJD가 발생하였다.

◆ 기 록 특 집 1

를 기피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축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중국·몽골·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국가는 구제역·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상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인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아프리카와 서부아시아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인수공통전염병인 웨스트나일열이 '00년 이후 북미 대륙의 미국에 유입되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03년 SARS 가 발생하는 등 신종 질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인체보건의료분야와의 협력과 함께 국제적으로 동물질병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에 이은 백색가루(탄저균) 소동과 일본의 O-157:H7 파동은 이들 동물질병의 병원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민심을 교란시키며, 사회불안을 조성하

국제화 시대에 따른 대내·외적 가축방역의 여건변화

< 대외적인 여건변화 >

- 입국자수 : ('00) 1,090만명 → ('02) 1,257만명 → ('03) 1,197만명
- 검역건수 : ('95) 47천건 → ('98) 50천건 → ('02) 107천건 → ('03) 110천건
- 검역품목수 : ('95) 259종 → ('98) 316종 → ('02) 444종 → ('03) 436종
- 교역국가 : ('95) 79개국 → ('98) 78개국 → ('02) 118개국 → ('03) 117개국

< 대내적인 여건변화 >

구 분	축종별 전업농가수 및 비율		축종별 전업농가 사육규모	
	1995	2003	1995	2003
한 육 우	2,485호(0.5%)	5,040호(2.7)	206천두(8.0%)	490천두(33.1)
젖 소	1,325호(5.6%)	4,539호(43.2)	98천두(17.7%)	343천두(66.1)
돼 지	1,113호(2.4%)	2,928호(19.2)	2,360천두(36.5%)	6,705천두(72.6)
산 란 계	357호(12.5%)	453호(21.3)	23,515천두(50.8%)	29,883천수(61.8)
육 계	306호(12.0%)	743호(46.1)	12,518천수(37.8%)	35,165천수(78.5)

※전업농가 : 한우, 젖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이상 사육농가

는 등 생물테러(Bio-terror)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IV.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가. 구제역

2000년 3월 24일~4월 16일(23일간) 사이 경기도 파주·화성·용인과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 등 3개도 6개 시·군의 15개 소사

육 농장에서(소 81두 ; 한우 62두, 젖소 19두)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감염가축의 살처분·매몰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주변의 감수성 가축(우계류 :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의 동물)들에게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4.16일 이후에는 추가발생이 없었으나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한 관계로 예방접종 중단후 1년이 경과한 2001년 8월 27일 그동안의 방역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하였고, OIE 구제역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표4.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방역활동 비교

구분	'00년	'02년
발생상황	○ 발생기간 : 3.24 ~ 4.16(23일간) ○ 발생건수 : 15건(소 15건)	○ 5.2 ~ 6.23(52일간) ○ 16건(돼지 15건, 소 1건)
방역조치	○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우계류 가축 살처분 ○ 반경 10km내 2차 예방접종('00.3.28 ~ 8.31)	○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우계류 가축과 3km내 돼지 살처분 ○ 예방접종하지 않음
이동제한 해제	○ 1차 예방접종 완료 30일 경과 혈청검사결과 음성(7.14일)	○ 살처분 완료 후 21일 경과 혈청검사결과 음성(8.7일)
국내 종식선언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01.8.31일)	○ 발생지역별 단계적 이동제한 해제 후 전국적 선언(8.14일)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	○ 예방접종 금지 후 1년 경과('01.8.31일)	○ 살처분 완료 후 3개월 경과('02.9.24일)
OIE 청정국 인증	○ '01.8.27 "구제역위원회"에 신청 ○ '01.9.19일 청정국 인정	○ '02.10.4 청정국 재인증 신청 ○ '02.11.29일 청정국 지위회복(OIE구제역위원회 : 브라질)
방역비용	○ 3,006억원	○ 1,434억원

◆ 기 혁 특 집 1

방역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9.19일 청정국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0년 구제역의 발생에 이어 2002.5.2~6.23 사이(52일간) 경기도 안성·용인·평택과 충북 진천 등 2개도 4개 시·군의 16개 농장(소 1, 돼지 15)에서 다시 발생하여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매몰하는 등 예방접종없이 강력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여 약 7개월 만인 2002.11.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다시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및 2002년도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입 가능성이 높은 수입건초, 해외여행객 및 외국 인근로자 등 위험요인별 방역관리대책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의 방역활동과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어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국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나. 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는 1947년 이후 우리나라의 상재 질병으로 매년 발생하였으나,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가축질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 6월 8일 3단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98년부터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게 되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정부와 양돈업계에서는 일본의 돼지콜레라 근절계획에 자극

받아 돼지콜레라 비백신 청정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1년 12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단과 함께 청정화를 선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방접종 중단 5개월만인 2002년 4월 강원도 철원에서 2건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인천 강화에서 추가발생하였으며, 경기도 이천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정부는 부득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확산을 억제하였으나 2003년 3월 18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5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65건이 발생하여 돼지콜레라 비백신 청정국의 꿈을 잠시 접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다.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만 제대로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데도 일부 양돈농가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여 '2003년 8월 9일 부터 12월 20일까지 7건, 그리고 '2004년에도 3건이 추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거 국내 발생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유전자형이 Type 3에 속하지만, 청정화 이후 '02년도 국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은 Type 2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보고된 것과 매우 유사한 유전자형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발생농장의 대부분은 역학조사 결과 경기도의 S종돈장에서 돼지를 분양 받은 공통점이 있어 종돈장의 돼지를 조사한 결과 돼지콜레라 바이

리스에 대한 항체와 함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02년도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03년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02년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종돈장에 유입되어 종돈장에서 분양된 돼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돈장에 대한 방역관리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다. 가금인플루엔자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밤을 새워 병성감정 의뢰된 닭을 검사한 결과 H5N1 혈청형의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일명 조류독감)로 진단하고 즉각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이 혈청형(H5N1)은 과거 홍콩에서 발생 시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어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동물과 사람에 대한 범정부적인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방역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서 과거 홍콩 사례와 베트남 및 태국에서 사람이 조류독감(가금인플루엔자)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방역활동의 지연과 함께 양계산물의 대폭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져 양계 및 오리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관련산업이 위축되는 등 커다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도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가금인플루엔자 국제표준연구소인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¹¹⁾의 유전자 분석결과에서도 베트남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는 다르고 따라서 각각의 유입경로(전파경로)도 다를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와 함께 국내산 양계산물의 안전성 소비홍보에 힘입어 이제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이전의 소비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양계산업계에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우리나라의 가금인플루엔자는 최초발생이후 '2004년 3월 20일까지 충북·충남·경기·전남·경북·울산·경남 등 7개도 10개 시·군에서 19건(닭 10건, 오리 9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발생 초기부터 발생농장과 주변 3km이내의

11)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소속 질병방역기관. 전염병이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이 신속한 분석 및 통제로 질병의 확산을 막아 단 시간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가기관.

◆ 기 록 특 집 1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392농가, 5,284천수)을 살처분하고 종란, 부화란, 식란 등은 폐기하였으며 이동제한 지역내의 가금산물 및 관련물품에 대한 엄격한 이동제한 등 조기종식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펼쳐왔다. 우리나라에서 가금인플루엔자의 종식선언은 이동제한 해제 후 건강한 병아리의 입식시험을 거쳐 재입식을 허용하고, 최종 발생

지역 재입식단계에서 종식선언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국내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중국 분리주 계통에 속하며, 유입·발생원인으로는 야생철새(특히 오리류)·해외여행객·불법 휴대육류 등으로 추정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V. 해외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표5. 국내·외 구제역, 돼지콜레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피해사례

질병명	발생시기	발생건수	살처분두수	피해액(억원)	비고
구제역	'00년 한국	15	2,216두	3,006	28억파운드
	'01년 영국	2,030	4,203천두	48,600	
돼지 콜레라	'02년 한국	16	160천두	1,434	23억달러
	'97~'98년 네덜란드	424	8,793천두	2,530	
	'02년 한국	13	39천두	214	
가금 인플루엔자	'03년 한국	72	98천두	342	65백만달러
	'83~'84년 미국	-	17,000천수	715	
	'03~'04년 한국	19	4,759천수	1,500	

가.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구제역과 같이 전파경로가 다양하고, 병원체의 생존력이 강하여 전파력이 강한 질병에 대해서는 해외여행객 등에 대하여 신발소독, 휴대축산물 검색 강화 등 사람관리 중심의 검역을 강화하고, 구제역 전

파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수입조사료(輸入粗飼料)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가축전염병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상의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여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년에도 과거 구제역 발생 경험을 되살려 발생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현장의 검역인력을 기동

배치하여 현장인력을 보강(56명→84명)하고, 검역탐지견을 확대 투입하여(12두→19두) 구제역 발생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여행객들의 신발소독과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수입건초에 대해서도 수입위생조건을 정하여 수출국에 작업장을 지정하고 수출국에서 1차 소독 후 국내 도착시 2차 소독을 실시하는 등 이중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구제역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컨테이너, 국내에서 나포되거나 또는 피항(避港)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는 등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 인솔자·해외 축산행사 참가자 등에 대한 출장교육을 통하여 가급적 해외 가축사육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귀국시에는 해외에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지(周知) 시킴과 아울러, 공항 출국시, 해외의 공관에서 비자발급시 그리고 국내 도착시 검역을 철저히

게 받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악성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혈정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찰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국내 구제역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제역 혈청검사 사업은 2003년도에 16,796농가 122,838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전국의 소, 돼지, 염소 등 1,897농가 100,266두와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 돼지 58,000두 및 전국의 종돈장 및 인공수정센터의 돼지 22,000두에 대하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발한 항체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일차검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구제역 전파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수입건초, 황사 및 압수된 휴대축산물에 대하여는 2000년도부터 매년 구제역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오고 있으며 2004년도는 3월까지 122건(건초 93, 황사 4, 휴대축산물 25)을 실시하였다.

표6. 세계적인 구제역 발생원인 분석

근 원	백분율(%)			비교(%) ▲증 ▼감
	1870~1968	1969~1993	1870~1993	
육류, 육제품 또는 음식물 쓰레기	71	23	66	▼48
공기(바람) 또는 철새	24	9	22	▼15
가축 수입	2	36	6	▲34
오염된 물건 또는 사람	3	4	4	▲1
백신	1	25	3	▲24
야생동물	<1	3	<1	▲2

※ 1870~1968 보고된 558건 및 1969~1993 보고된 69건 분석 결과

◆ 기획특집 1

소 해면상뇌증(광우병)에 대하여도 2003년도에 1,038두를 검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미국산 수입소(753두)를 포함하여 2,200두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금인 플루엔자 등 주요가축질병에 대한 혈청검사가 계획되어 있다.

나. 국경검역과 연계한 국내방역관리 강화

국경검역의 강화만으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병원체가 농장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양축농가에서 가축의 위생관리와 소독 등 예방적 차원의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홍보하여 오고 있다. 매년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범정부적인 방역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후에는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꾸준히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구제역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외국인농업연수생 입국시 사전 현지에서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입국시 공항에서 검역과 함께 입국 후에는 고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업체(220여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직접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제역·돼지콜레라·해면상뇌증 등의 감염가축을 조기색출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서 정한 두수 이상을 선정하여 매년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및 밀집사육지역(38



개 시·군)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찰활동의 강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 가축방역기관, 관련단체 등에서 방역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범정부차원의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24시간 비상방역상황실을 유지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시·도의 방역실태를 점검·독려하며, 시·군 단위의 지역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농가의 소독실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하는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역별 클러스터에 대한 강사지원 등 방역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워크숍을 실시하고 축산농가,

가축중개상·사료판매상·동물약품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ARS 전화를 통한 방역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곳은 농장이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을 생활화하여 농장내로 병원체가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전국 소독의 날”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축사 내·외의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에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외국인농업연수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철저한 휴대품 검색과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수칙을 교육한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의 이동과 함께 가축중개상·동물약품판매상·사료판매상·분뇨운반처리업자·인공수정사 등 농장 출입자에 대해서도 농장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내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가축질병의 방역은 가축과 관련된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역할이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며, 축산관련 단체 종사자들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하여야만 청정 축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소비자를 위한 가축방역과 축산식품안전체계 확립

가축방역은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향상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6년 주요 가축질병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열악한 도축환경을 개선하고 원료육의 위생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선진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 축산물가공처법 제정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2003년 7월까지 도축장 규모별로 HACCP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시행하여 왔다.

표 7. 축산물작업장 HACCP 적용현황('2004년 4월말 현재)

구분	도축장(의무)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계	소·돼지	닭 등		
대상	162개소	111	51	2,315	166
적용	83	80	36	92	32
도축비율		소:89%, 돼지:95%	92%		

◆ 기획 특집 1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위생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함께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HACCP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과 HACCP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대 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오고 있다. 또한, 축산물 처리·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의 적용을 금년부터는 유통·판매업체에까지 자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조기에 유통·판매업체의 표준위생관리기준의 정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물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축의 사육단계에서 위생적인 사육관리이다. 축산식품 생산의 제일 첫 단계는 가축의 사육이며, 가축사육 농장에서 가축의 건강은 축산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된다. 1993년 세계수의 식품위생학회(The World Association of Veterinary Food Hygienists) 제11차 총회에서는 건강한 가축·안전한 식품·건강한 사람(Healthy Animal·Safe Food·Healthy Men)을 대회 구호로 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강한 가축 생산의 요체는 가축질병의 방제이다. 가축 사육단계에서 질병예방과 철저한 국경검역으로 해외악성가축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는 하는 것은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의 확보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영국의 광우병, 벨기에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사고를 경험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가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생산자의 자가검사 및 현대식 위해 통제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생산농가에 우수농장관리규정(Code of good practices)을 도입하며, 식품원료의 품질관리, 세균오염 방지, 저장·수송 중의 냉장 유지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자에게 HACCP제도를 시행하고, 위해 발생 시 다양한 식품원료(사료 포함)의 확인을 위한 생산자(회사)의 등록과 위해요소의 추적(traceability)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시장에서 수거하는 절차상의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규정(REGULATION (EC)No. 178/2002)¹²⁾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안의 핵심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된 안전성의 확보이며,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축사육임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가축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축산물생산 의지가 굳은 영세 사육 농가를 연계하여 축종별, 지역별 계열화를 추진하고 고품질 시대에 맞추어 상품 차별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얼굴 있는 제품”으로 브랜드화 및 추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자는 노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고 더욱 노력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상표와 표시사항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계열화 주체는 항상 상표(브랜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생산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줌으로서 자기가 관리하는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소비자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위생감시로 부정불량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업체(소)를 배제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업체(소)는 보호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축산농가와 축산물 처리·가공·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책임과 의무이며, 축산의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축산식품이 유통될 경우 그에 따른 1차 피해자는 소비자가 되겠지만 소비자가 외면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우리 축산업계가 공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와 함께하는 축산물안전관리의 중심에 서서 소비자를 위한 가축방역과 축산식품 안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과 역할을 다합시다.

12)REGULATION (EC)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2002.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